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5. 11 선고 2021가단314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4. 20.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답 2,588㎡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12. 9. 접수 제130945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20. 12. 30.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소장 청구취지 기재 매매예약 완결일자 2020. 12. 9.은 착오기재이다)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추경준

별지